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일
발 의 자 : 이성재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「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시 시행하게 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(1) 개정조례안 : 별첨

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성주군의회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정례회에서는”을 “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”를 “정례회에서는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.	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---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----------. ----------.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.	②---정례회에서는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생 략	③ 현행과 같음